

2022년도 제1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2년도 제1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9월 29일

의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계급 | 직렬 | 직류 | 선발 예정 인원 | 시험과목(1·2차 병합) | 시험시간 |
|-----------|-----|------|----------------|----------------|------|
| 일반직 9급 | 시 설 | 일반토목 | 10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60분 |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1) 배점 및 문항형식: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택일형 (문항당 1분 기준)
- 2)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20%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및 제66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기준일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2022. 7. 5. 이후에는 개정된 법률 적용

2) 거주지 제한

- ①번 또는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①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예시: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3.1.」 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종전 경상북도 달성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3) 응시연령

| 계 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
| 9급 | 18세 이상 | 2004. 12. 31. 이전 출생자 |

나. 자격(면허)증 제한(기준일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 계 급 | 직 렬(직 류) | 자격(면허)증 |
|-----|-----------|---------------------------------------------------------------------------------------------------------------------------------------------------------------------------------------------------------------------------------------------------------------------------------------------------------------------------------------------------------|
| 9급 | 시 설(일반토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 표 | 비 고 |
|-----------------------------|------|------------------|------------------|------------------|-----|
| 2022.10.20.~10.25. (3일간) | 필기시험 | 2022. 10. 28.(금) | 2022. 11. 5.(토) | 2022. 11. 7.(월) | |
| ※ 취소마감일 10. 26. | 면접시험 | 2022. 11. 7.(월) | 2022. 11. 11.(금) | 2022. 11. 14.(월) | |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10. 20.(목) ~ 10. 25.(화) ※ 접수시간 : 09:00~18:00

나. 접수장소 : 의성군청 총무과 인사담당 (2층) ☎ 054-830-6155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주소 : 우)37337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총무과 인사담당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10.25)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접수마감일 우편접수자는 등기 소인일자 확인 후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사전연락 하여야 함.)

※ 우편접수는 접수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54-830-6155)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라.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5,000원)를 환불해 드립니다.

마.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붙임 서식) 1부(사진2매, 의성군수입증지 인증 포함)
 - 응시수수료 : 5,000원 (의성군수입증지-의성군청 1층 민원실에서 구입)
 - ※ 우편접수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정부수입인지 불가)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 3)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증명 1부(해당자)
-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 1부(해당자)

6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비율표

|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개만 적용 |
|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의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다' 참고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2)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3)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2)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3)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또는 의성군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나’ 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의성군홈페이지 시험공고란에 공고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기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이어폰 등), 전산 기기(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마.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제출서류 내용 허위 기재,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또는 그 밖의 임용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라 4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으며, 4년 후에도 의성군 자체기준에 따라 전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시험일정을 변경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차.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총무과 인사담당(054-830-61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응시원서 양식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응시원서

본인은 (2022년도 제1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의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 | | | | | | | | | | | | | |
|------------------------|-------------------------------------------------------------------------------------------|--|--|--|--|--|--|--|--|--|--|--|--------------|-------------------|-------------------------------------------------------------------------|
| ※응시번호 | | | | | | | | | | | | | 성명 | (한글)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으로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 응시직렬 및 직급 (응시직류) | | | | | | | | | | | | | | (한자) | |
| 주민등록 번호 | | | | | | | | | | | | | - | | |
| 주소 | (우) | | | | | | | | | | | | | | |
| 거주지제한 | 해당되는 란에 체크해주시오 ① 계속해서 주소지 <input type="checkbox"/> ② 3년 이상 거주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 | | 의성군 수입증지 붙이는 곳 | |
|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의사상자 등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 | | | |
| 전자우편 | | | | | | | | | |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
| 전화 (휴대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시번호 | | | | | | | | | | | | | 응시표 (2022년 제1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으로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 응시직렬 및 직급 (응시직류) | | | | | | | | | | | | | 성명 | |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2022년 월 일 의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 | | | | | | | | | | | | | | |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① 「※」 표시가 되어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직렬 및 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 시설9급)

- (응시직류)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류를 기재

(예 : 일반토목)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거주지제한: 공고문의 응시자격-거주지제한을 확인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⑥ 자격증 대상: 공고문의 가산점 적용을 확인하여, 대상자에 한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⑦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의성군수입증지란에는 의성군 수입증지(5,000원)를 게첨

(구입처 : 의성군청 1층 민원실)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5,000원)로 교환하여 동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의성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나.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II.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 및 이용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나.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